

koreahana.or.kr

# 북한이탈주민 일 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



# 북한이탈주민 일 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



북한이탈주민

# 일 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



남북하나재단  
Korea *Hana* Foundation

# 목차

## I

###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지원사업 ..... 4

- 01 취업지원사업 5
- 02 창업지원사업 12
- 03 영농지원사업 14
- 04 정착자산형성(미래행복통장) 18
- 05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 
우선구매제도 안내 21
- 06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23

## II

###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사업 ..... 24

- 01 정부 25
- 02 기타기관 30

## III

### 각 지역별 재단 취업담당 전문상담사 연락처 ..... 33

# I

##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지원사업

# 01 취업지원사업

## 지역취업지원

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중심의 취업지원을 위해 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를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하여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

### 지원내용 및 절차

- 구직 등록, 취업상담, 취업알선, 동행 면접, 취업 후 사후지원 등
- 서비스 지원 프로세스



관련 문의

재단 일자리지원부 지역취업지원사업 담당자 02-3215-5885

## 취업바우처

구직자 및 재직자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

**지원대상** 만18~59세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및 재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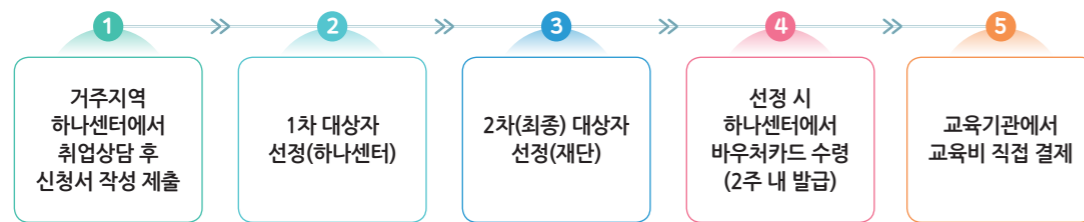
**지원분야** 국가 기술·전문자격 / 공무원 / 외국어 / 컴퓨터 / 취업

**지원금액** (분야별 차등)

| 과정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국가기술자격/국가전문자격      | 200만 원 내 | • 국가기술/전문자격증, 공무원 과정은 1과목 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일 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(100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1과목만 신청 가능)<br>* 내일배움카드와 중복사용 불가 |
| 공무원                | 200만 원 내 |  |
| O·A 컴퓨터            | 100만 원 내 |  |
| 외국어(영어/중국어 등)      | 100만 원 내 |  |
| 취업컨설팅(서류/NCS/면접 등) | 100만 원 내 |  |

**신청방법**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

### 지원절차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취업바우처 담당자 02-3215-5882

## 전문직 양성과정

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 (1인 1자격)

### 지원 대상 및 분야

| 분야     | 지원 직종   | 지원 자격  |
|--------|---|--|
| 국가기술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기술자격법」 기술·기능 분야 직종 중 기사, 기술사, 기능장</li> <li>「국가기술자격법」 서비스 분야 직종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1급 이상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재남 경력 활용</b> : 해당 국가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연도~차년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<b>재북 경력 활용</b> : 해당 국가자격 시험과 관련한 재북 경력(학력)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확인 또는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당해연도~차년도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 |
| 국가전문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자격기본법」 제3장 국가자격 직종 중 학력, 경력, 자격 등 국가시험 응시의 제한이 있는 자격</li> <li>기타 국가시험 응시의 제한은 없으나, 재단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무사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, 관세사, 보험계리사, 손해사정사 등</li> </ul> </li> </ul>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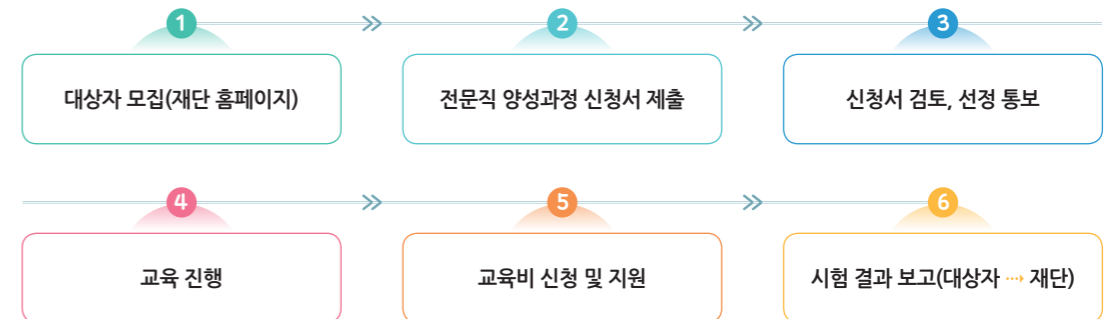
※ 세부 지원 자격증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

**지원금액** 1인 300만 원 내외(교육비, 교재비, 응시료 등)

**모집기간** 공고일 ~ 정원 마감까지(예산 소진 시)

**지원인원** 30명 내외

### 지원절차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전문직 양성과정 담당자 02-3215-5838

## 스피치 교육

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을 위한 언어-스피치교육 및 대인(직장) 의사소통 교육

### 오프라인 스피치 교육

#### 교육내용

| 회차         | 주제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주<br>(공통) | 기초 스피치                | 기초 발음, 발성, 억양 등 이론 학습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자주쓰는 외래어 및 단어 학습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발음 실습 훈련, 1분 스피치 연습                |
| 2주~3주      | 취업 기초 및 커뮤니케이션        | 면접 커뮤니케이션 & 이미지 메이킹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문서 작성, 커뮤니케이션 스킬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직장 문화 이해 언어표현<br>갈등관리 | 남한 기업문화의 이해<br>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 관리 |

- ※ 강사, 일시, 장소, 회차 수 등은 참가자 특성에 따라 그룹별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
- ※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별 신청자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
- ※ 참가 교육생 훈련수당 1회 15,000원 지급, 점심 식사 제공

**교육일정** 매주 토요일 (10시~17시) 6시간, 2~3주차 교육으로 진행

**교육장소** 지역별로 상이

**교육방식** 오프라인 집합 교육

### 온라인 스피치 교육

#### 교육내용

| 회차 | 주제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회 | 자기소개스피치    | 자기소개하기, 개인 습관 파악, 억양발음 코칭 |
| 2회 | 표준어 발음 이해  | 남북한 발음 차이 및 교정            |
| 3회 | 드라마 대본 읽기  | 대본 활용 표준발음 훈련             |
| 4회 | 발음·억양 최종실습 | 교정된 억양과 발음으로 자기소개, 피드백    |

\* 총 4회 매 15분씩 전화 수업(억양·발음 코칭) 진행

- ※ 교육 일정 및 시간은 참가자 특성에 따라 그룹별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
- ※ 교육 커리큘럼은 신청자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

**교육일정** 1일 2시간 총 4회 교육 + 15분씩 총 4회 전화 수업

**교육방식** 온라인 zoom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 수업 및 전화 수업



관련 문의 02-3215-5886

## 일체험 프로그램

미취업 북한이탈주민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선경험 제공

### 지원내용

|             | 연수자   | 연수기업   |
|-------------|---|--|
| <b>지원대상</b> | • 만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면 누구나<br>(참여자 지위 : 단시간근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기업, 기관, 개인사업자<br>• 일체험 가능한 기술력 및 공간이 확보된 곳 |
| <b>참여기간</b> | • 최대 8주 : ① 1일 3시간×주4일, ② 1일 4시간×주3일<br>• 공휴일 및 20시 이후 근무 불가, 4시간 운영 시 30분 (중간)휴식 |  |
| <b>지원금액</b> | • 최대 144만 원 (①타입 8주, 세금공제)<br>•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최대 87.2만 원 (①타입 8주)<br>•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, 재단에 후청구        |
| <b>신청방법</b> |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 |  |

※ 2024년 기준이며, 참여기간 및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


관련 문의 재단 일자리지원부 일체험 담당자 02-3215-5774

## 탈북민 온라인 채용관

인크루트와 협력,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

- 서비스 내용**
- 1) 공공기관, 대기업, 중견기업, 탈북민 우대채용 등 채용공고 게시
  - 2) 이력서·자소서 첨삭, 취업 관련 동영상 강의 등 취업 클리닉
  - 3) 남북하나재단 및 지자체 취업지원 사업 안내 등

**이용대상**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누구나

**이용방법**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홍보 배너 클릭  
\* 온라인 채용관 오픈 준비 중이며 6월 중 오픈 예정



관련 문의 02-3215-5838, 5886

## 단기연수 지원제도 유형 I [직장체험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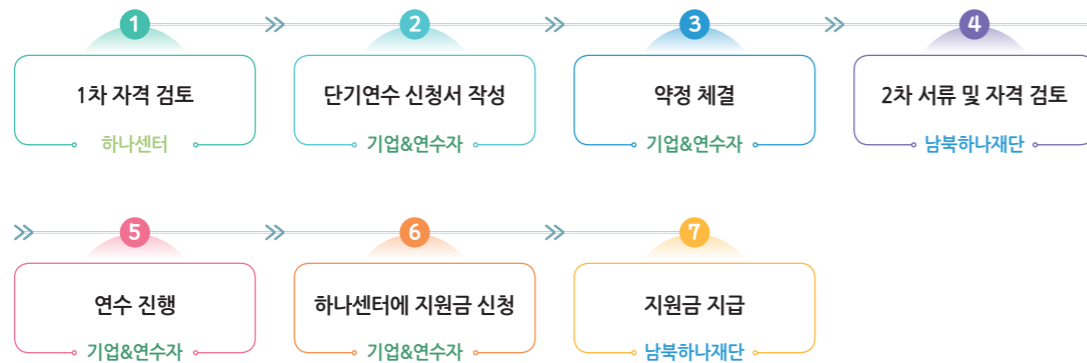
미취업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습득 및 직업 적응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

### 지원내용

|             | 연수자  | 연수기업  |
|-------------|--|---|
| <b>지원대상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19~70세 미만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나센터 취업상담사에게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한 자</li> <li>※ 센터별 지원가능인원이 제한되는 관계로, 취업이 어려운 대상을 우선으로 연계함</li> <li>※ 연수자 제외 대상은 문의처로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</li> <li>4대보험 가입,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</li> <li>※ 단, 제조업 10인 이상, 건설업 20인 이상, 숙박업 10인 이상</li> <li>※ 기업 제외 대상은 문의처로 확인</li> </ul> |
| <b>지원요건</b> | 취업희망자(취업관리시스템 등록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년 이상 채용</li> <li>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, 상시근로자의 30% 범위 내 인원</li> <li>최저임금법에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</li> </ul>  |
| <b>지원금액</b> | 최대 월 45만 원 X 3개월 지원 (세금공제)   | 최대 월 85만 원 X 3개월 지원   |
| <b>신청방법</b> | 해당 거주지역 취업전문 상담사 상담 후 신청   | 취업전문상담사가 기업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|

※ 2024년 기준이며,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
### 지원절차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단기연수 유형 I 담당자 02-3215-5774

## 단기연수 지원제도 유형 II [기업연계형]

북한이탈주민에게 분야별(과정별)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

### 참여대상

참여기업 및 참여자

**참여기업** : 직업훈련 후 취업처를 확보한 기업·기관 등(재단과 협약 체결)

**참 여 자** : 구직등록 후, 해당 기업처에 취업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의 탈북민

### 지원기간

직업훈련기간(모집분야에 따라 상이) + 단기연수기간(3개월)

### 지원금액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  | 세부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 <b>교육비</b><br>(참여기업)   | 직업훈련 운영기관 교육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<b>훈련수당</b><br>(참 여 자) | 최대 월 30만원<br>(1일 4시간 이상: 30만, 4시간 이하: 15만)   | △버스운전기사양성과정은 훈련수당 대신 '버스운전실습연수비' 지급(최대 160만원)  |
| 3 <b>숙박비</b><br>(참 여 자)  | 타지역 거주자 숙박비 지원<br>(재단 내규 기준에 준하여 지급)         | △1일(훈련참여일) 기준 최대 7만원<br>△개인 선지출(일·주단위 결재) 후 청구 |
| 4 <b>연수비</b><br>(기업/참여자) | 유형 I 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<br>(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| △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 시 지급<br>△유형 I 참여기업 기준 적합 시 지원    |

### 지원절차

※ 단,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단기연수 유형 II 담당자 02-3215-5886

## 02 창업지원사업

### 신규 창업자 지원

- 모집기간** 연 1~2회
- 지원대상** 옷수선·미용·사회복지 중심과 아산나눔재단 연계 청년층 창업지원
- 지원내용** 실습비용(최대 3개월), 창업시 재정지원(1,000만 원, 2년분할)
- 지원과정** 신청 및 선정 → 창업실습 → 창업지원 → 사후관리
- 문의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신규 창업지원 담당자 02-3215-5827  
\* 재단 창업·영농·기업 재정지원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

### 기존 창업자 지원(경영개선자금 지원)

- 모집기간** 연 2회(상·하반기 1회)
- 지원대상**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
- 지원내용** **운수업** 타이어 및 적재함  
**일반분야** 시설개선 및 집기비품 등 구입비용 최대 300만 원/회, 누적 900만 원 지원
- 지원과정** 신청 → 현장실사 → 서류심사 → 본인구매 → 서류제출 → 지원금 지급
- 문의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기창업자 지원 담당자(일반분야) 02-3215-5827  
재단 일자리지원부 기창업자 지원 담당자(운수업분야) 02-3215-5773  
\* 재단 창업·영농·기업 재정지원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

### 온·오프라인 창업교육

- 모집기간** **온라인** 연중상시  
**오프라인** 연 1~2회
- 지원대상** 북한이탈주민 (예비)창업자
- 지원내용** **온라인** 창업교육 플랫폼 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강의 자유수강  
**오프라인** 신규/기존 창업자 대상 창업교육
- 지원과정** **온라인** 홈페이지 수강신청  
**오프라인** 교육신청 → 수강 → 수료증 발급
- 문의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창업교육 담당자 02-3215-5773  
\* 오프라인 창업교육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

### 경영컨설팅 지원

- 모집기간** 연중상시
- 지원대상** 북한이탈주민 (예비)창업자
- 지원내용** 전문가 경영컨설팅 연간 최대 4회 제공
- 지원과정** 컨설팅 신청서 제출 → 컨설턴트 연계 → 컨설팅 실시 → 만족도 조사
- 문의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컨설팅 지원 담당자 02-3215-5827

### 판로지원

- 모집기간** 세부사업별 상이
- 지원대상** 북한이탈주민 창업기업(영농인 포함)
- 지원내용**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매행사 개최, 전시회·박람회 참가비 일부 지원(50만 원 이내)
- 지원과정** 신청 → 서류심사 → 행사진행 → 증빙자료 제출 → 참가비 지급
- 문의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판로지원 담당자 02-3215-5827  
\* 지원내용 및 지원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# 03 영농지원사업

## 일반 모집

지역 전입 탈북민 중 영농희망자

### 남북하나재단 육성사업

####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

대상 : 만 19세~70세 미만 북한이탈주민 영농희망자, 既종사자 (지역 전입일 기준 1년 미만)  
 내용 : 이론 및 기초실습(100시간 이상), 2~3주, 심화실습(3~5개월)  
 지원 : 실습비(80만 원) 및 실습지도비(40만 원)

#### 영농기초교육

대상 : 영농희망자  
 내용 : 영농이론교육

### 지자체 연계 육성사업

대상 : 영농희망자  
 내용 : 영농기초교육 (2박 3일)

## 사후지원(영농경쟁력 제고 및 기반조성)

- 영농운영비 지원
  - 既영농인 : 최대 15백만 원
  -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수료자 : 최대 18백만 원
- 농산물 판로지원
- 컨설팅 등 사후관리

## 영농정착성공패키지(재단+농정원 공동진행)

**지원대상** 영농희망자, 既영농인(1년 미만) 15명 내외

- 지원내용**
- 1 영농교육(2~3주)
  - 2 영농실습(3~5개월)
  - 3 귀농단계별로 지원(최대 1년)

### 지원절차



\*농정원 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영농지원사업 담당자 02-3215-5771

## 영농·어업종사자 운영비 지원

- 지원대상** 만 20~70세 미만 중 농(축·수·임)업 경력 6개월 이상인 자
- 지원인원** 30명 내외
- 지원내용** 초기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운영비 지원(비료, 종자 등) 소규모 시설개보수, 농자재 구입비 등
- 지원금액** 최대 15백만 원(1차년도 - 10백만 원, 2차년도 이후 - 5백만 원)  
 - 지급방식 : 간접지원(구매업체에 재단이 지원하는 방식)  
 - 최대 15백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신청 가능  
 - 재단에서 유사사업으로 15백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 지원 가능
- 지원조건** 본인 명의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 
 \* 상세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자격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
 \* 어업분야는 별도 문의 바람

### 지원절차



##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수료자 운영비 지원

- 지원대상** 만 20~70세 미만 중 농(축·수·임)업 경력 6개월 이상인 자
- 지원인원** 30명 내외
- 지원내용** 초기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운영비 지원(비료, 종자 등) 소규모 시설개보수, 농자재 구입비 등
- 지원금액** 최대 18백만 원(1차년도 - 10백만 원, 2차년도 이후 - 8백만 원)  
 - 지급방식 : 간접지원(구매업체에 재단이 지원하는 방식)  
 - 영성패 1~2기 수료자는 15백만 원 이하 내에서 신청 가능  
 - 최대 18백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신청 가능  
 - 재단에서 유사사업으로 18백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
 - 지원대상자가 지자체 보조사업비 신청 시 재단 지원 운영비를 자부담분으로 인정 가능
- 지원조건** 본인 명의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 
 \* 상세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자격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람

### 지원절차



# 04 정착자산형성(미래행복통장)

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소득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(매칭)해 주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·사업 등의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,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
## 신청자격 (모두충족)

- 2014.11.29.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경과 후 3개월 이상 취업·사업 등 경제활동 상태
-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
## 가입제외대상

- 정부·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(자산형성지원 사업)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교직원,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직원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
-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
- 과거 약정위반으로 중도해지된 자

**지원내용** 본인 소득의 30% 범위 내, 월 10~50만 원 까지(5만 원 단위) 1:1 매칭 적립

- 적립방법**
- 가입자(북한이탈주민) : 재단이 지정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매월 지정일자에 납입
  - 남북하나재단 : 가입자가 저축한 익월에 지원금 적립(익월~6개월 소요될 수 있음)

## 지원기간(약정기간)

최대 4년(기본약정기간 2년, 거주지보호기간 내 1년씩 최대 2년 연장)

\* 거주지 보호기간 중 '출산, 병역의무 이행, 장애, 학업' 사유 발생 시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

## 가입자 의무사항

- 가입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
- 약정서에서 정한 적립금 입금 준수
-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, 경제활동상태 등 변경내용 재단 통보
- 가입자 사망 시 가족 구성원이 이 사실을 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조치
- 근무지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

##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

- 실직,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(최대 6회, 1년 6개월까지)
- '출산, 병역, 장애, 학업'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중지 가능
-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(중도해지),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해당 이자만 지급

##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되는 경우

- 본인의 경제활동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
  - 약정기간 중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거나,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은 경우
  -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(선정된 이후라도 적용)
  - 기타 약정상의 의무 위반, 재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
- \* 단,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로 중도해지 할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금 지급 결정

**만기해지**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고, 만기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(이자포함)을 지급

\* 단, 재단에서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50% 이상은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 함

**만기해지 시 유의사항**

- 약정기간 만료 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
-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저축한 경우 지급 불가
- 정부지원금 사용용도는 ▲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, ▲본인 및 자녀의 교육·기술훈련비, ▲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, ▲결혼비용,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, ▲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.

\*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

**지원금 사용 자격**

-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
- 지원대상자의 동일 가구원 중 직계존비속
-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

**신청방법**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

# 05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상품 우선구매제도 안내

**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**

북한이탈주민 고용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통일부로부터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

**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상품 우선구매제도**

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,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

**<근거법령>**

**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**

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
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」**

제35조의5(우선 구매)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.

-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
## 모범사업주 지정요건

### 고용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-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
- 5%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

\*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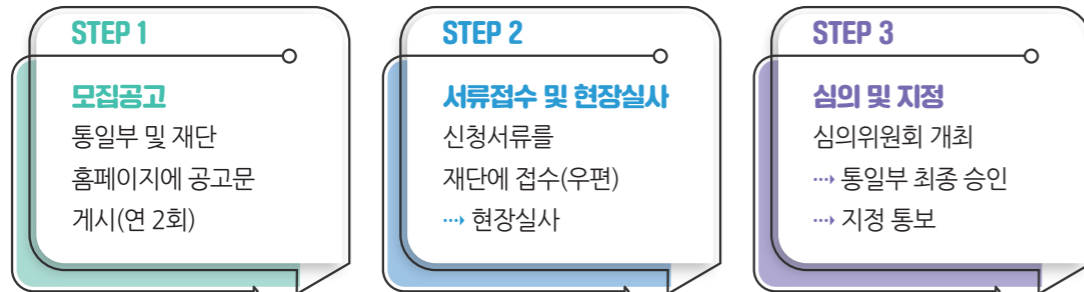
### 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소기업

###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지원내용**
-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
  -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(3년간 지원, 기업별 최대 3천만 원)
    - 시설비, 기술개발비, 시제품 제작비, 품질개선 비용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비용
  - 경영컨설팅, 채용연계 등 경영개선지원
  -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

**신청제한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
### 지정절차



\*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
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 
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및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.



**관련 문의** 재단 일자리지원부 우선구매 담당자 **02-3215-5773**

# 06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 
위하여 통일부에서 지정한 기업

\* 지정기간 : 3년

###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-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, 전문예술법인·단체 등
- ‘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,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- 일자리제공형, 사회서비스제공형, 혼합형, 지역사회공헌형, 기타(창의·혁신)형
- 영업활동을 수행
-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### 지원내용

-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
-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(3년간 지원, 기업별 최대 2천만 원)
- 경영, 세무, 노무 등 컨설팅 제공
-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

### 모집기간

- 연 2회(상·하반기) 모집 실시

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.



**관련 문의**

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담당자 **02-3215-5773**  
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**1800-2012**

# II

##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사업

### 01 정부

#### 고용노동부

#### 01. 청년도전지원사업

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\*(도전, 도전+)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
\* (도전) 단기(5주 이상) 프로그램, (도전+) 중·장기(15주, 25주 이상)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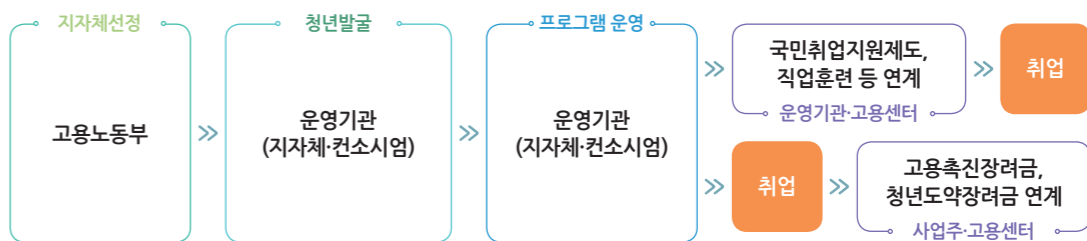
**사업내용** ①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·모집 →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·이수 → ③ (이수시) 국민취업지원제도, 직업훈련 등 (취업시) 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

**지원대상** 구직단념청년 등  
- 구직단념청년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 등

**지원규모** 구직단념청년 등 9,000명

| 구분      | 도전 프로그램  | 도전+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|          | 중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기   |
| 사업 운영기간 | 5주 이상    | 15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참여수당    | 1인당 50만원 | 1인당 150만원 (50만원×3회)               | 1인당 250만원 (50만원×5회)<br>• 이수시 20만원          |
| 이수 인센티브 | 없음       | 이수시 2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<br>(국취 1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) |
| 취업 인센티브 | 없음       |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<br>3개월 근속 시 50만원 |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<br>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    |

#### 사업추진체계



## 02. 국민취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### 지원대상 (수급자격 요건)
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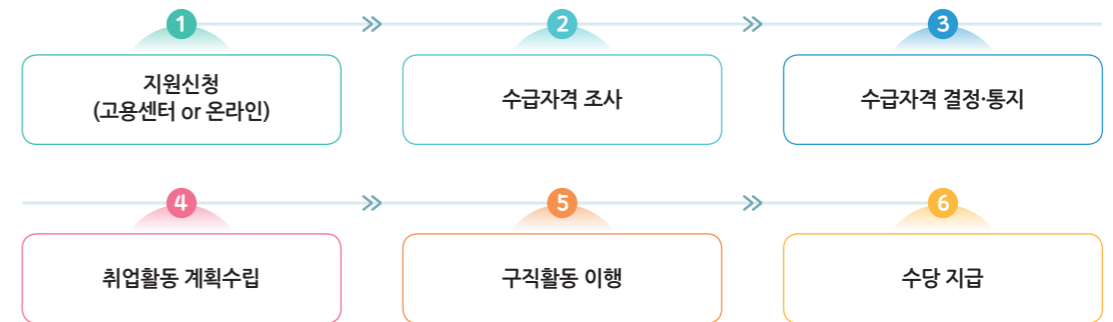
| 필요요건  | 연령         | 가구단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구원 재산     | 취업경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I 유형  | 요건심사형      | 15~6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소득 60%↓  | 4억원 이하<br>(청년: 5억원 이하) |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|       | 비경활        | 15~6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소득 60%↓  | 4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|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|       | 선발형<br>청년* | 15~34세<br>+<br>병역의무 이행기간 (최대3년) | 중위소득 120%↓ | 5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|
| II 유형 | 특정계층       | 15~6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청년*        | 15~34세<br>+<br>병역의무 이행기간 (최대3년) | 무관        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중장년        | 35~6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소득 100%↓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청년연령은 2024.2.9. 신청자부터 적용 (2024.2.9.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~34세임(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없음))

###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| 구분   | 취업지원서비스   | 소득 지원   |
|------|---|---|
| I 유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담·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</li> <li>직업훈련·일경험·창업·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등 연계</li> <li>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</li> </ul> | <b>구직촉진수당</b><br>월50만원 + 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(월 최대 40만원)<br>추가지원 × 6개월<br>*부양가족: 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<br><br><b>조기취업성공수당</b><br>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<br><br><b>취업성공수당</b><br>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이하) |
|      |   | <b>취업활동비용</b><br>최대 195.4만원*<br>*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(월28.4만원x6개월) 등<br><br><b>조기취업성공수당</b><br>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(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)<br><br><b>취업성공수당</b><br>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이하 및 특정계층)      |

### 사업추진체계



관련 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**국번없이 1350**

고용노동부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/ 고용24 홈페이지 [www.work24.go.kr](http://www.work24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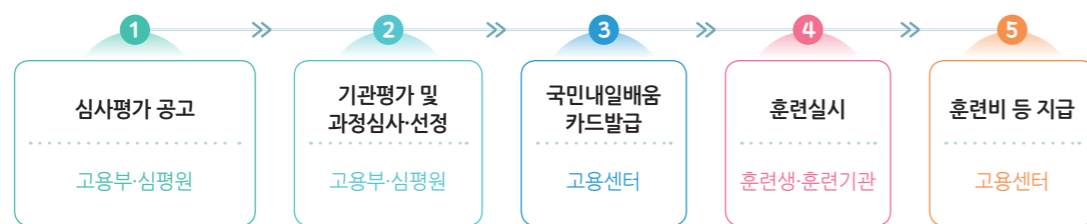


## 03. 국민내일배움카드
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- 지원과정**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
 \*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직접 검색·확인 가능
- 지원대상**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
 \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- 지원한도**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  
 \*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  
 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  
 \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- 유효기간** 계좌 발급일부터 5년

### 사업추진체계



## 04. 구직자·기업 도약보장 패키지

인구·산업구조 변화, 취업·채용 형태 다양화, 일에 대한 인식 변화, 온라인·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고용서비스 여건 변화에 대응 필요

고용정책 패러다임을 '급여 지원 → 서비스 중심'으로 전환하고, 약자 안전망 강화, 빈일자리 해소 등을 위해 맞춤형 취업·채용 지원 강화

- 서비스 내용**
- 구직자 ①** 잡케어(Job Care) 기반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 
 ② 1: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
 ③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
- 기업 ①** 일자리 특성, 구인 직종 및 임금·복지 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유형 분류  
 ② 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·노무 컨설팅, 인프라·환경 개선,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\*  
 \*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 협업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
- 지원대상**
- 구직자** 실업급여 수급자,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
- 기업** 근로조건,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자카르타, 홍콩 등 16개소

### 지원예시

- 구인난으로 신문고에까지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에  
**인지도 개선+훈련+채용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**  
 - 온라인 기업설명회, 실업급여 수급자·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 
 -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연계 등 HRD 지원 → 재직자 역량강화  
 - 뿌리기업 공동 채용행사 진행 → 66명 채용(목표인원 초과)
- 각각 다른 취업 어려움을 가진 남매 구직자를  
**심층상담·진단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을 제시**  
 ① 강박장애, 장기실업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누나 → 심리안정 지원, 잡케어 직무특성 분석, 온라인 창업 훈련제공  
 ② 공황 장애로 면접이 두렵고 직업설계가 막막한 동생 → 모의면접으로 자신감 향상, 성취 경험을 통한 온라인 활동(숨\*, \*몽 등 재능공유) 지원, 캐드 분야 온라인 훈련지원





# 02 기타기관

## 지자체

### 01. 서울시

- 홈페이지** 서울일자리포털 <https://job.seoul.go.kr>
- 지원내용** 채용정보, 교육훈련, 창업지원, 일자리 서비스, 일자리 뉴스 등
- 관련문의** 구인/구직/교육상담 1588-9142

### 02. 경기도

- 홈페이지** <https://www.gg.go.kr>
- 지원내용** 평생학습, 청년 일자리 지원, 여성취업&교육, 일자리 정보 등
- 관련문의** 경기도 콜센터 031-120

### 03. 인천시

- 홈페이지** 인천일자리포털 <https://www.incheon.go.kr/job/>
- 지원내용** 채용정보, 온라인 채용관, 채용행사, 직업교육, 창업, 청년지원 등
- 관련문의** 인천시 콜센터 032-120

## 유관기관

### 01. 경기도 일자리재단

- 홈페이지** <https://www.gjf.or.kr>
- 지원내용**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
- 관련문의** 대표 콜센터 031-270-9600

### 02. 아산나눔재단

- 홈페이지** <https://asan-nanum.org>
- 지원내용** 아산상회(북한이탈주민 창업가를 위한 초기 사업 지원금, 인큐베이팅, 특강, 코칭 등)
- 관련문의** 아산나눔재단 1668-4563 / 아산상회 02-3453-8939

### 03. 열매나눔재단

- 홈페이지** <https://merryyear.org>
- 지원내용**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, 편의점 창업지원사업 등
- 관련문의** 북한이탈주민 사업 02-6959-2612

# Ⅲ

## 각 지역별 재단 취업담당전문상담사 연락처

| 센터명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할구역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 | 동부<br>02-882-2107<br>02-882-2102     | 송파, 강동, 강남, 서초, 관악, 동작, 성동, 광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서부<br>02-2668-7712                   | 강서, 서대문, 은평, 마포, 용산, 종로, 중구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남부<br>02-2690-8762                   | 양천, 구로, 영등포, 금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북부<br>02-975-2465                    | 노원, 성북, 중랑, 강북, 도봉, 동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  | 동부<br>070-7717-6492<br>070-7717-4025 | 용인, 성남, 이천, 광주, 하남, 양평, 여주, 구리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서부<br>032-329-2325                   | 부천, 광명, 시흥, 안양, 과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남부<br>031-655-9005<br>031-8059-2572  | 오산, 평택, 안성<br>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북부<br>070-4185-0026                  | 의정부, 포천, 남양주, 연천, 양주, 동두천, 가평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서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70-4866-58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70-4866-58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70-4866-58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중부<br>031-410-6070<br>(내선704)        | 안산, 의왕, 군포, 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북부<br>070-4234-45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춘천, 홍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속초, 고성, 양양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부<br>070-4398-44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주, 영월, 평창, 정선, 횡성, 강릉, 동해, 태백, 삼척 |
| 부산  | 051-441-2240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  | 053-356-0463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구, 경산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  | 032-439-1174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  | 062-961-8107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 | 070-4755-5598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, 세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산  | 052-249-3161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북  | 070-7198-5907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남  | 041-415-1515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북  | 063-227-7789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남  | 061-273-2141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054-256-0456                         | 울진, 영양, 영덕, 청송, 포항, 영천, 경주, 청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북  | 054-444-8861                         | 봉화, 영주, 문경, 예천, 안동, 상주, 김천, 구미, 의성, 군위, 칠곡, 청주, 보령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055-263-4138<br>055-388-4138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주  | 064-723-2123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지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북한이탈주민

# 일 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

발행일 | 2024년 5월 14일

발행처 | 남북하나재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, 4-5층  
(도화동 565, SNU장학빌딩)

TEL. 1577-6635

FAX. 02-3215-5789

디자인·제작 | 공간기획

